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 의안번호 : 2350
- 발 의 자 : 남창진 의원(찬성자 33명)
- 발 의 일 : 2025년 2월 3일
- 회 부 일 : 2025년 2월 6일

2. 제안이유

-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출생자녀 및 남한에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에는 교육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법령이 개정되면서 지원 대상에 포함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정의에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추가함(안 제2조제2호).
- 나. 지원 대상을 북한이탈주민에서 북한이탈주민 가정으로 확대함(안 제4조 제1항).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다. 입법예고(2025. 2. 11. ~ 2. 15.)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 의견

가. 조례 개정 입법취지 및 필요성 검토

- 본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본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출생자녀 및 남한에서 태어난 자녀까지 교육지원 대상에 포함하기 위하여 정의에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추가하고(안 제2조), 지원대상을 북한이탈주민에서 북한이탈주민 가정으로 확대하며(안 제4조), 관련 용어를 정비(안 제7조) 하려는 것임.
- 서울시 거주 북한이탈주민은 6천 3백여명으로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18세 미만 자녀는 북한 출생(11.9%)보다 제3국 출생(10.3%) 및 국내 출생(77.9%) 비율이 훨씬 높은 상황임.

[서울시 거주 북한이탈주민 수 : 6,365명('25.1.31 기준)]

(단위 : 명)

구분	'25.1.31	'24.1.1	'23.1.1	'22.1.1	'21.1.1
서울시	6,365	6,432	6,595	6,776	6,970
비율(%)	20.3	20.5	21.0	21.5	22.1
전국	31,422	31,315	31,365	31,503	31,521

※ 서울시가 전국의 20.3%로 경기도 35.5%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거주하며 서울거주 비율은 매년 소폭 감소추세임.

[출생지별 북한이탈주민 자녀 현황]

(2024년, 단위 : %)

구분	북한 출생	제3국 출생	남한 출생	계
서울시	11.9	10.3	77.9	100.0
전국	5.9	15.9	78.2	100.0

- 출처 : 2024년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남북하나재단

- 북한이탈주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 관련 서울시는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및 제3국 출생 자녀도 교육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여,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정서멘토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사업내용

○ 전문교사의 1:1 맞춤 방문학습 교육서비스 및 정서멘토링

- (학습과목) 한글, 국어, 독서, 영어, 수학, 과학 중 1과목 선택
- (교육진행) 주1회, 회당 60분(학습 30분, 정서멘토링 20분, 부모상담 10분)

○ 기초학습능력 등 검사를 통한 학업성취도 측정, 직업체험 프로그램 실시

< 세부 학습내용 >

연번	세 부 내 용	진행시간
1	<p>< 학습 멘토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시각적 이미지 활용한 글자습득(통글자, 한글자, 자음자 등) ■ (국어)다양한 문장을 통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향상 ■ (독서코칭)책 읽기를 통한 문해력, 표현력 역량 강화 ■ (영어)알파벳, 발음중심문자, 단어, 문법 등 체계적 수업 제공 ■ (수학)연산력 완성, 문제해결능력과 창의력 수학교육 제공 ■ (과학)기초과학, 생물 등 종합형 탐구활동을 통한 과학 학습 	매회 30분
2	<p>< 정서 멘토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상담, 감정코칭,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 등 운영 (뇌 지도 그리기, 감정날말카드, 타인 생각읽기 게임 등) 	매회 20분
3	<p>< 부모양육 상담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회 학습 지도 방법 등 양육 및 교육 정보 제공 	매회 10분

- 출처: 행정국 방침서 발췌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북한이탈주민법」) 제24조 개정(2024.10.22., 시행일 2025.4.23.)으로 교육지원 대상이 ‘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에서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까지로 확대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출생지 구분없이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명문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교육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이, 수학능력(修學能力), 출생지, 그 밖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통일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학력 진단·평가, 교육정보관리, 교육, 연수 및 학습활동의 지원 등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교육지원과 지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행정국은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가 교육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에 동의하나,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조례 지원대상에 추가하는 것은 지원대상 적정 여부에 대한 논란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사전검토 이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나. 세부 내용 검토

1) “북한이탈주민 가정” 정의 신설(안 제2조)

○ 안 제2조는 정의 규정에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정의를 신설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u><신설></u> 2. (생략)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제 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 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현행 제2호와 같음)

- 정의 규정은 해당 자치법규 중에 쓰이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자치법규를 해석하고 적용할 때 나타나는 의문점을 해소하고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함으로써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친족’의 사전적 의미가 ‘배우자, 혈족, 인척을 통틀어 이르는 말’ (표준국어대사전)이므로 당초 취지인 ‘북한이탈주민 자녀’ 지원의 범위를 넘어 지원대상이 불분명하게 해석될 여지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2) 지원대상 및 범위 조항 정비(안 제4조제1항)

- 안 제4조제1항은 지원 대상에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명문화하고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지원의 범위) 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 략)</p> <p>2. <u>생활고충·법률·취업</u> 등의 상담 및 지원</p> <p>3. <u>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u></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지원 대상은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으로 하며, 지원 범위-----</p> <p>1. (현행과 같음)</p> <p>2. <u>생활고충·법률</u> -----</p> <p>3. <u>기초생활물품 지원 등 생활편의 제공</u></p> <p>4. <u>의료 및 돌봄 지원</u></p> <p>5. <u>취업 및 장기근속 지원</u></p> <p>6. <u>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및</u></p>

<p>4.·5. (생략)</p> <p>② (생략)</p>	<p><u>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u></p> <p>7.·8.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	---

- 지원대상을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으로 명문화하고 지원범위를 생활고충, 기초생활물품, 의료, 취업 등 분야별 각 호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세부적인 지원내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정의규정에서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혼인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는 공동체로 정의하여 포괄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는 바, 지원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한편, 최근 3년간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현황을 보면 뉴딜일자리 위주로 지원되고 있는 바, 맞춤형 취업교육과 함께 구인 수요 기업 및 공공기관 등과의 체계적인 연계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최근 3년간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현황]

구 분	2024년	2023년	2022년
매력(뉴딜)일자리사업	18명	5명	3명
취업인원 (취업기관명)	5명 (남북하나재단3, 강원북구하나센터1, 서울시 다시서기센터1)	2명 (여성가족재단, IT민간기관)	-

[최근 3년간 의료지원사업 실적 결과]

구분		2024년		2023년		2022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치과진료 (틀니, 보철 등)	치료인원	100명	80명	100명	77명	100명	88명
	예산(백만원)	174	167	168	137	294	167
건강검진 등 (일반질환 등 포함)	검사인원	200명	235명	360명	202명	260명	201명
	예산(백만원)	106	94	158	87	130	79

3) 자구 표현 정비(안 제7조)

- 안 제7조는 협회회의 심의 사항 규정 내용에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반영하여 자구 표현을 정비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p>제7조(협회회의 기능) 협회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p> <p>1. <u>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u></p> <p>2. <u>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u></p> <p>3. 4. (생략)</p>	<p>제7조(협회회의 기능) ----- <u>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 지원에 관한 다음 -----.</u></p> <p>1. <u>취업 -----</u> -----</p> <p>2. <u>교육지원-----</u> -----</p> <p>3. 4. (현행과 같음)</p>

- 조례의 용어 및 자구 표현을 통일성 있게 정비하여 자치법규 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규정내용을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법적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전문위원	정찬일	입법조사관	이태기
------	-----	-------	-----

〈 참고자료 〉

[2025년 북한이탈주민 지원관련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	구 분	'25년 예산	비 고
	총 계	3,136,668	
[일반회계]		2,381,600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서울시민 길라잡이 행사, 서울생활 안내서 제작 등	12,000	
	·북한이탈주민 신규전입자 기초생활 지원	142,500	
	·의료지원(종합건강검진, 치과 등 의료비 지원)	310,000	
	·돌봄지원(가정돌봄, 긴급돌봄)	148,000	
	·정착지원 사업 홍보비 및 업무추진비	40,000	
맞춤형 자립 및 사회통합 지원	·북한이탈주민 가정자녀 학습 지원	242,000	
	·가족통합 프로그램 운영	30,000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	49,100	국비 (통일부)
지역적응센터 운영 지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4개) 운영 지원	1,408,000	국비 (통일부)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755,068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 사업	·북한이탈주민 취창업 지원	190,000	
	·북한이탈주민 자원봉사단 운영	50,000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및 인식개선 공모사업	300,000	
	·찾아가는 건강돌봄미 운영	215,068	

[북한이탈주민 입국 및 정착과정]

('25.2.기준)

보호 요청 및 국내이송 (해외공관)	- 보호 요청 시 외교부, 관계부처에 상황보고 및 전파 - 해외공관 또는 주재국 임시보호시설 수용 - 신원확인 후 주재국과 입국교섭 및 국내 입국 지원
〈 국내 입국 〉	
조사 및 임시보호 조치	- 입국 후 국정원 조사 및 긴급한 치료 등 임시보호조치 실시
보호결정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심의를 거쳐 보호여부 결정 ※ 하나원 교육기간(12주) 중 4~5주차에 결정여부 통보(비보호 결정자 희망시 조가수료) - 보호결정 세대 단위 결정
하나원 정착준비	- 하나원 입소 후 사회적응교육 (12주, 400시간)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안정, 우리사회 이해 증진, 진로지도 상담, 기초 직업훈련 - 초기정착지원 : 주거배정, 정착금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배정 : 하나원 교육 5~6주차에 주거 지역 배정, 10~12주차 주택 배정 ※ 본인 의사 최대한 반영하되, 주택 물량이 부족할 경우 추천제 배정 • 정착기본금 : 세대원 수에 따라 지급(하나원 수료 시 지급)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 5px 0;"> ▶ 세대별 기본금 : 1인 1,000만원, 2인 1,600만원, 3인 2,100만원, 4인 2,600만원, 5인 3,100만원, 6인 3,600만원, 7인 이상 4,100만원 </div> - 수료 후 전입 : 하나원 수료 후 정착도우미(센터 직원) 동행 서울시 전입
〈 거주지 전입 〉	
거주지 보호 (5년)	- 전입절차(전입신고 등) 진행, 임대주택 첫 입주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 5px 0;"> ▶ 임대주택 배정 전용면적 : 2인 이하 33㎡이내, 3인 40㎡이내, 4인 이상 50㎡이내 ※ 입주 후 30년 이상 거주 가능(2년마다 계약 갱신) </div> - 사회적응교육(하나센터) : 전입 후 8일(50시간) 초기집중교육 및 지역적응지원 - 주거지원금 지원 : 임대주택(SH 제공) 보증금 지원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 5px 0;"> ▶ 세대별 지원금 : (1인)16,000천원, (2~4인)20,000천원, (5인 이상)23,000천원 </div> - 입주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 청소·방역 지원(세대당 25만원), 기초생활물품 지원(세대당 125~180만원) • 통일부 : 가전제품바우처(150만원), 식료품, 생활용품 등 지원 - 사회보장지원 : 생계·의료급여 등 지원 - 일자리 지원 : 취업·창업·영농 관련 교육훈련, 취업연계, 자격인정 등 - 교육지원 : 특례 편입학 및 등록금 지원 - 상담지원 :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전문상담사 등을 통한 지원 - 보호담당관 : 거주지(자치구)·취업(고용지원센터)·신변(경찰서) 보호담당관 운영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현황(5년간)]

※ '20~'23년 집행액 : 결산기준 / '24년 집행액 : '24.12.31기준

사업명	2020		2021		2022		2023년도		2024년도			비고
	예산액 (천원)	집행액 (천원)	집행률 (%)									
총계	2,001,035	1,967,614	1,983,460	1,941,622	2,955,172	2,541,892	2,132,300	2,011,554	2,918,700	2,611,246	89.4%	
정착 지원 (소계)	593,035	566,645	539,960	508,396	612,172	539,938	520,000	483,629	607,200	604,681	99.6%	
신규전입자 길라잡이 행사	10,560	996	10,560	0	5,472	3,778	4,000	1,116	4,000	2,671	66.8%	
서울생활안내서 제작 배포	10,000	9,537	10,000	9,824	0	0	12,000	10,959	0	0	0.0%	
기초생활 지원	168,000	168,000	151,200	144,900	92,400	46,000	57,000	57,000	133,200	132,050	99.1%	
정착지원 홍보 및 업무추진비	0	0	0	0	30,000	30,000	20,000	20,000	30,000	29,960	99.9%	
의료지원 (치과,건강검진)	388,112	388,112	353,672	353,672	364,000	342,360	326,000	294,097	280,000	280,000	100%	
가정돌봄	0	0	0	0	110,500	110,500	90,000	90,000	150,000	150,000	100%	
긴급돌봄	0	0	0	0	0	0	3,000	2,457	10,000	10,000	100%	
마음돌봄	13,363	0	11,528	0	8,000	7,300	8,000	8,000	0	0	-	
정착지원 관계자 교육	3,000	0	3,000	0	1,800	0	0	0	0	0	-	
국비 사업 (소계)	1,408,000	1,400,969	1,443,500	1,433,226	1,423,200	1,416,514	1,393,300	1,392,047	1,358,700	1,358,669	99.9%	
지역적응센터	1,316,000	1,316,000	1,329,000	1,329,000	1,309,000	1,309,000	1,309,000	1,309,000	1,311,000	1,311,000	100%	
지역협의회	92,000	84,969	114,500	104,226	114,200	107,514	84,300	83,047	47,700	47,669	99.9%	
맞춤형 자립 (소계)	0	0	0	0	950,000	585,440	219,000	135,878	952,800	647,896	68.0%	
가정 자녀 학습 지원	0	0	0	0	130,000	123,543	120,000	109,091	222,800	220,471	99.0%	
가족통합 프로그램	0	0	0	0	80,000	0	59,000	19,520	30,000	29,700	99.0%	
의료 (간병·치료비)	0	0	0	0	160,000	44,561	0	0	0	0	-	
북한이탈주민 교정양성	0	0	0	0	60,000	55,400	32,500	0	0	0	-	
단체지원 역량강화	0	0	0	0	40,000	28,813	0	0	0	0	-	
취창업 지원	0	0	0	0	120,000	0	0	0	250,000	122,092	48.8%	'24년 기금편성
북한이탈주민 자원봉사단	0	0	0	0	0	0	7,500	7,267	50,000	28,980	57.9%	'24년 기금편성
사회통합 (공모사업)	0	0	0	0	360,000	333,123	0	0	300,000	176,653	58.9%	'24년 기금편성
찾아가는 건강돌봄	0	0	0	0	0	0	0	0	100,000	70,000	70.0%	'24년 기금편성

※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은 '23년도까지 일반회계 예산으로만 추진되었으나,

「市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기금용도) 개정('23.12.29.)으로

기금 용도에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이 추가되어, '24년도부터는 기금으로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